

[일련번호 : 21]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비 지급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천구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의3(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2023~2024년 「양천구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양천구는 자전거 안전지킴이 봉사단 및 강사 파견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2022.2.25.)에 근거하여 보조강사(실기·실습 등) 등급으로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2024년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강사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강습일지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나, 기상악화로 인한 실외 교육 수업일시 변경, 보강수업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이 강습일지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등 강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비 지급 소홀 내역

연번	강좌명	강사명	강습일지 상 월 강의시간	강사비 지급 시 적용 월 강의시간	비고
1	자전거 안전교육 ('23.9월)		16시간	20시간	4시간 증빙없음
2			16시간	20시간	4시간 증빙없음
3	자전거 안전교육 ('24.4월)		8시간	10시간	2시간 증빙없음
4			8시간	10시간	2시간 증빙없음
5	자전거 안전교육 ('24.10월)		8시간	10시간	2시간 증빙없음
6			8시간	10시간	2시간 증빙없음

[표2] 강습일지 작성내역

강습일지	부적정 내역
	23.9. 강의시간 총 16시간이나 20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보강시간 미명시)
	24.4. 강의시간 총 8시간이나 10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보강시간 미명시)
	24.10. 강의시간 총 8시간이나 10시간 수당 지급, 보강시간 미명시 (수목급 보강으로만 기재)(15일 수강인원 0명)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실외 교육으로 기상 악화 시 교육진행이 어려워, 당초 예정일정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후 보강 수업을 통해 실제 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관련 서류에 실제 교육일자 및 보강수업 일정 등을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강사의 강의확인서 및 관련 사진(2023. 9. 14., 2024. 4. 18., 2024. 10. 17. 촬영 각 1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사 수당은 공공재정지급금으로서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서류(근무일지 등)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함에도 ㉡㉡과는 이러한 필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증빙서류 확인에 소홀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서에서 추가로 제출한 강의확인서 및 사진으로는 감사에서 확인된 3개월분의 보강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므로 ㉡㉡과의 위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

## 5.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강사수당 지급 시 증빙서류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